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41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조인철 · 박희승 · 정준호
민형배 · 안도걸 · 이해민
양부남 · 박용갑 · 박수현
서삼석 · 정진욱 · 서천호
장종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

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
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삭제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 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 ----- ----- ----- ----- ----- ----- ----- ----- 받은 <u>경우에는 신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u>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